

# 자동차와 선박 검사 및 운항관련 책임 소재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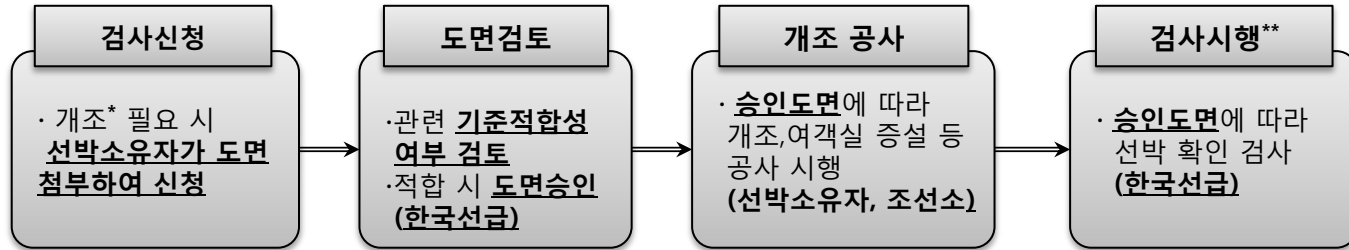
승 용 차	← 자동차 제작 · 검사 →	← 자동차 운행 →
	Hardware	Software
	◎ 성능과 기준 적합여부 검사 ⇒ 제작사 자기 인증 (제작자 자체)	○ 과속 · 과승 단속 ⇒ 정부 ○ 과속 · 과승 사고 시 ⇒ 운전자 책임 ○ 각종 안전법규 준수 ⇒ 운전자 의무 ○ 오일교환, 브레이크 정비 등 ⇒ 운전자 의무
		자동차 정기검사
		○ 매연 기준초과,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 안전기준 미달 시 ⇒ 검사불합격 ⇒ 수리 또는 폐차 ○ 수리 후 안전기준 충족 시 ⇒ 검사합격 ⇒ 운행
	* 근거 : 자동차관리법 등	

선 박	← 선박 건조 · 검사 →	← 선박 운항 →
	Hardware	Software
	◎ 선박구조 ·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사 ⇒ 검사기관 * 조선소는 검사기관이 승인한 도면에 따라 건조	○ 과승 · 과적 단속 ⇒ 정부(해경), 운항관리자(여객선) ○ 과승 · 과적 사고 시 ⇒ 선박소유자(운항선사) 책임 ○ 각종 안전법규 / 운항조건 준수 의무자 ⇒ 선박소유자(선장 등 선원)
	• <b>선박소유자</b> 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·기관·설비 등의 임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<b>작동·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</b> 하여야 한다(선박안전법)	선박 정기검사
		○ 구멍 · 소화 등 각종 설비 및 선체 · 기관상태 안전기준 미달 시 ⇒ 검사불합격 ⇒ 폐선 ○ 안전기준 미달한 설비 수리/정비 후 기준 충족 시 ⇒ 검사합격 ⇒ 운항
	* 근거 : 선박안전법, 해운법 등	

❖ 한국선급은 선박 건조 단계에서 「구조 및 성능」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검사

# 선박검사 진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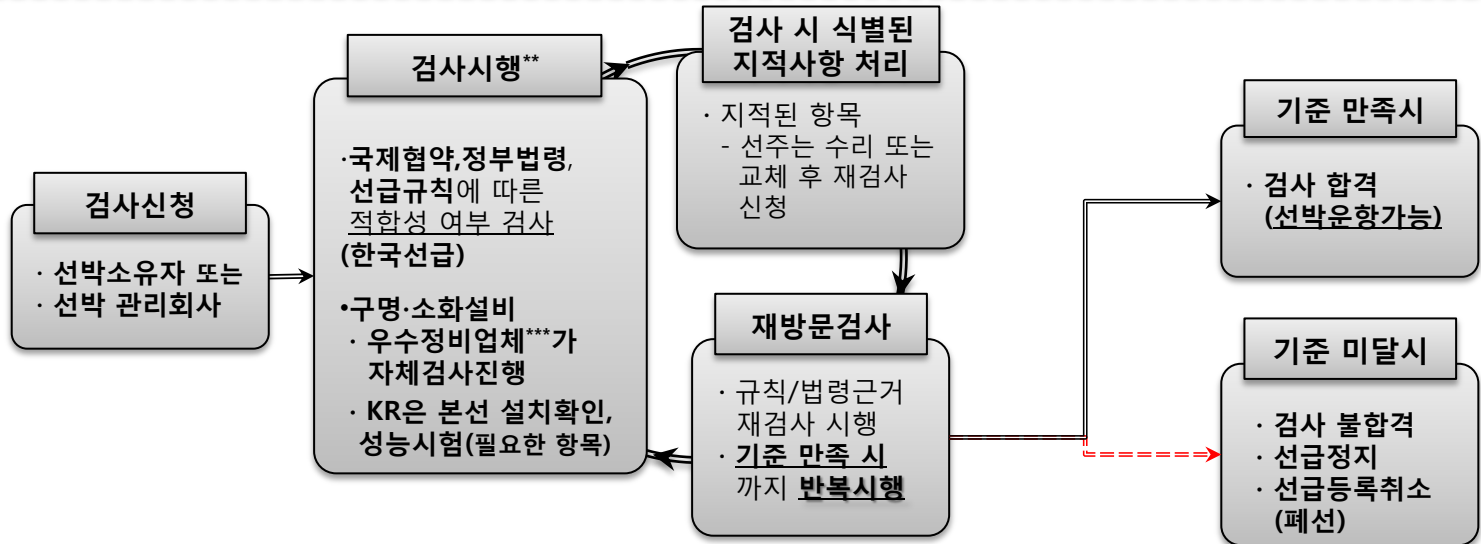
## 선박 개조



• 선박의 개조(길이, 너비, 깊이 변경) 및 용도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. - 선박안전법 제 15조 제2항  
(여객실 증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대상이 아님)

\*\* 검사시행 및 후속 절차는 아래 참조

## 운항중인 선박 검사



\*\*\* 정부가 선박전문단체인 선급에 검사를 대행토록 하듯이, 구명·소화설비에 한하여 우수정비업체에게 정비·검사를 대행토록 함.

※ 우수사업장 제도 : 선박안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동일한 제도 운영(국제인명안전협약)